

「2023년 인천광역시 연구개발(R&D) 활성화 사업」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연구역량 결집 도모를 위하여 「2023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2023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인천시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연구역량 결집 도모
- 지원분야
 - 신산업 : 반도체, 수소, 바이오, 디지털
 - 주력산업 : 소재부품, 제조공정혁신, 산업융합
- 지원규모 : 지원분야별 2건 내외 (총 4건), 과제당 120백만원 이내
- 수행체계 : 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기간 : 12개월(2023. 4. 1 ~ 2024. 3. 31)
- 접수기간 : 2023. 3. 16(목) ~ 3. 22(수) 18:00한
- 접수방법 : 온라인시스템 접수(인천 R&D 관리시스템)
<http://irds.itp.or.kr/user/index.php>
- 기술료 : 해당없음.

2 지원자격 및 제한

□ 지원자격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가능)

수행기관 구분		자격요건
주관기관		① 관내 중소·중견기업 ② 인천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③ 인천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참여기관	기업	인천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기준
	대학 및 연구기관*	수도권 소재 *단,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삭제) 또는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기준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단,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1) 자격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 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수행기관의 지원자격은 협약종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기간 내 주소지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 불가

2) 위탁연구개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별 현금 연구개발비(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20% 이내로 제한, 위탁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재위탁 불가

3)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이 개발할 예정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프라 보유 증빙자료 제출 필수

4) 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제한

-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거나 인천으로 이전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

- 2023년 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동시에 참여 불가
 - ※ 사례)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관,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기개발 되었거나, 타 사업에서 기지원된 과제인 경우
- 접수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 또는 신청방법을 미준수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에 거짓이 포함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또는 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수행기관의 대표이사,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①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 ② 신용거래 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③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④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선정에 따른 인천시 지원금 지급요건 미충족 기관이 수행기관에 포함된 경우(이행보증보험 발급 불가 등)

□ 기타사항

- 1) (연구상한제)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 참여연구원은 최대 5개 제한
 -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포함하여 최대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2) (연구총량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계상.(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

여율은 2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 연구상한제 및 연구총량제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내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3) (연구노트) 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연구노트를 작성

4) (연구개발비) 주관기관이 총연구개발비(현금)의 51% 이상을 사용

5) (성과지표) 성과지표 중 자율지표의 경우 성과목표 5개 영역 중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 연구개발경쟁력 제고) 중 2개 이상 영역에서 각 1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

6) (연구인력 채용) 총연구개발비 1억 원당 신규 연구인력 1인 채용 필수

※ 신규 연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구개발과제 착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협약 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약서를 제출하고 채용 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신규 연구인력은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 계상이 가능. (단, 수행기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의 경우에는 인건비 계상·지급 불가)

7) (유사과제) 주관기관은 기존 연구개발과제 등을 검토하여 지원신청 과제와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8) (제재정보)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재정보 검색결과를 제출

※ 제재정보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발급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3. 16(목) ~ 3. 22(수) 18:00한

□ 신청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 일체를 인천 R&D 관리시스템(IRDS)를 통해 업로드(<http://irds.itp.or.kr/user/index.php>)

※ IRDS - 알림마당 - 인천시 R&D 지원사업 - 해당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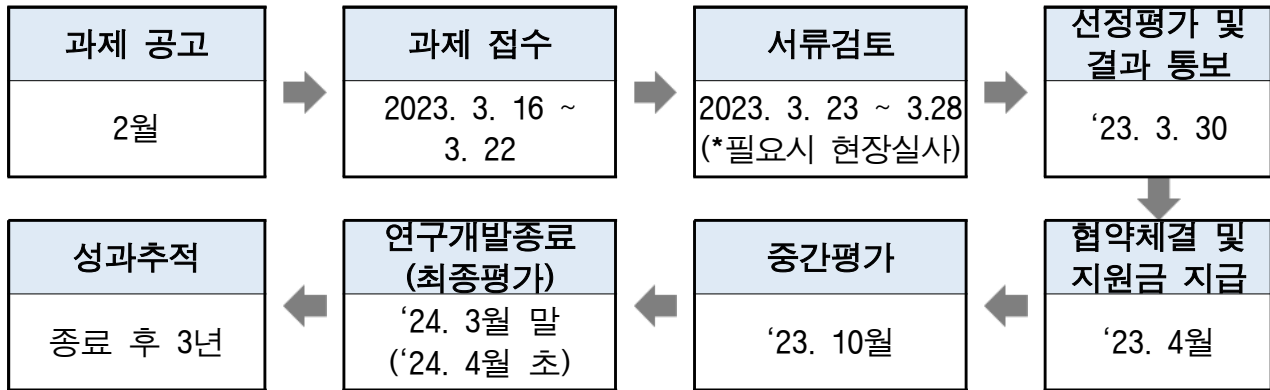
No	제출서류	부수	주관 기관	참여 기관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	
2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
3	과제정보공개 동의 및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1부	○	○
4	수행기관 참여확약서	1부	○	○
5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1부	○	○ (해당시)
6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	1부	○ (해당시)	○ (해당시)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참여연구원 재직 여부 확인)	1부	○	○
8	사업자등록증	1부	○	○
9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제출	1부	○	○
10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제출	1부	○	○
1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1부	○	
12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제재정보 검색결과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각각 발급)	1부		NTIS 발급 (주관&참여)
13	가점항목 증빙자료* *접수마감일까지 확정되어 유효한 자료만 인정	1부		해당 시 제출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되, 주관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 날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날인완료본을 제출할 것

※ 7~13번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라는 파일명으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4 추진절차 및 상세내용

□ 추진절차



※ 상기 추진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상세내용

- 추진체계 :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민간부담금
 - 시비(인천시 지원금) :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최대 120백만원)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민간부담금(현금) :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참고]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주관기관이 시비 120백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구분	시비(A)	민간부담금			총연구개발비 (E=A+D)
		현금(B)	현물(C)	소계(D)	
조건	시비 ≤ (총연구개발비 × 75%)	민간부담금(현금) ≥ (민간부담금 × 40%)		민간부담금 ≥ (총연구개발비 × 25%)	
금액	120,000,000	16,000,000	24,000,000	40,000,000	160,000,000
비중	75%	10%	15%	25%	100%

- 기술료 : 해당 없음

※ 도전적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단,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음.

5 평가기준 및 가점항목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20)	시장·산업의 수요	연구개발 대상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5
		산업 및 시장 내 연구개발 수요의 명확성	
		경쟁자를 고려한 시장선도 가능성	
	인천시 정책 부합성	인천시의 신성장동력 전략산업과의 부합성	5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기존 기술 및 제품 대비 독창성 및 차별성	10
과제목표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우수성 (45)	정량적 지표의 적절성	기술적 성능지표 및 평가 방법의 적절성	10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세부 연구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세부 연구내용 구성의 적절성	20
		세부 연구내용의 수행 가능성	
		세부 연구내용의 구체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장애요인의 명확성	10
개선 대안의 적절성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산정의 적절성	5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 (20)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관련 제품생산 경험 및 역량	20
		연구개발인력 및 인프라 등 R&D 역량	
기대효과 (15)	기술/경제/사회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5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정책·사회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합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점은 부여 조건에 따라 별도로 부여함.

□ 평가방법

- 1) 서류심사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지원자격, 지원 제한사항 등 사전심사 및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통보
- 2) 발표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평가

□ 가점부여 조건(총 6점 이내 부여)

- 인천시 우수기업 인증(유망중소, 비전,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3점
- 연구책임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 3점
- 신규 연구인력 채용(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신규 연구인력 채용조건	1인	2인 이상
가점	2점	3점

-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시 : 3점

참여 조건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
가점	3점(1회에 한함)

6 문의처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유광민 책임연구원	Tel : 032-260-0617 E-mail : gmyoo@itp.or.kr
--------------------------------	--